



[시행 2020. 6. 4] [법률 제16700호, 2019. 12. 3, 제정]  
[시행 2020. 6. 4] [대통령령 제30752호, 2020. 6. 2, 제정]  
[시행 2020. 6. 4] [해양수산부령 제414호, 2020. 6. 3, 제정]

# 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

제1장 총 칙

제2장 선박교통관제 계획

제3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

제4장 선박교통관제사

제5장 벌칙 및 과태료

제6장 부 칙

해양경찰 필기, 고득점 합격을 원한다면?

**선택하자, 해사법규**

명품강의,  
김성곤 교수님



# 제1장 총 칙

## 1. 목적 <제1조>

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교통의 안전 및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정의 <제2조>

구 분	용어 정의
1. 선박교통관제	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며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 및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항만운영정보를 제공하는 것
2. 선박교통관제구역	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구역
3. 선박교통관제사	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.

## 3. 적용범위 <제3조>

대한민국의 「영해 및 접속수역법」에 따른 영해 및 내수(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수·늪 등은 제외)에 있는 선박 중에서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■ 관제대상선박** <제13조>

1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
2.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
  - ▶다만,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
3.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
4.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

## 4. 국가의 책무 <제4조>

국가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

## 5. 선박소유자의 책무 <제5조>

① 선박소유자는 국가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자기가 소유·관리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도록 운항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·훈련 등을 실시하고 제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선박교통관제의 목적·용어,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
2. 선박교통관제의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
3. 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 현황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▶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<시행교칙 제2조> (운항자에 대한 교육·훈련)

1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하는 항로에 관한 사항
2. 「해사안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에 관한 사항
3. 「해사안전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운항자에 대한 교육·훈련의 내용·방법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▶ 운항자에 대한 교육·훈련 <시행령 제2조>

- ①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을 다음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 1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(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공사·작업·조사 등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로 한정한다)
  2. 「선박직원법」 제2조제4호의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
  3.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

## 6. 국제 교류·협력의 증진 <제6조>

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·단체 등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·연구 등 국제 교류·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7. 다른 법률과의 관계 <제7조>

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



## 제2장 선박교통관제 계획

### 1.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<제8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기본계획은 「해사안전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.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
  2. 선박교통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
  3.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  4.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
  5. 선박교통관제 관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  6. 선박교통관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④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⑤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⑥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▣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 <시행령 제3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  1. 관할구역에서의 해상교통량, 선박 이동경로, 해양사고 현황
  2. 관할구역에서의 레이다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무선설비의 설치·운영 현황 및 계획
  3. 관할구역에서 선박이 접안하거나 계류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·운영 현황 및 계획
  4. 관할구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 시행의 필요성
  5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해양경찰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# 2.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<제9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수립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

## ▶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 <시행령 제4조>

-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기본계획의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기본계획의 수정·보완 필요성을 검토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,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법 제8조제1항"은 "법 제9조제1항"으로, "기본계획"은 "시행계획"으로, "같은 조 제5항"은 "같은 조 제2항"으로 본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## 3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제출 등 <제10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

## ▶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<시행령 제5조>

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.

해양경찰 필기, 고득점 합격을 원한다면?  
**선택하자, 해사법규**

명품강의,  
김성곤 교수님



## 제3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

### 1.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<제11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효율적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관서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▣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 <시행령 제6조>

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수역 중에서 유효한 레이더 탐지범위 내의 해상교통량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.

1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
2. 「해사안전법」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
3. 「연안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

#### ▣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 <시행규칙 제3조>

-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설치·운영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는 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32조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한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### 2.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<제12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따라야 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#### ▣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<시행령 제7조>

-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1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
  2. 법 제13조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해당 선박에 도선사가 승선·하선하는 때의 관제통신 방법
  3. 기상이 악화되거나 시계가 제한된 경우의 선박운항통제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.



### 3. 관제대상선박 <제13조>

1.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
2.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
  - ▶ 다만, 어선법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
3.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
4.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

### 4. 선장의 의무 등 <제14조>

-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.
- ③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④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·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.

#### ▣ 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 <시행규칙 제4조>

- ① 관제대상선박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무선설비는 **초단파 무선전화**를 말하며, 같은 항에 따라 갖춰야 하는 관제통신 주파수는 별표 1과 같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는 「전파법」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.
- ⑤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,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▣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<시행령 제8조>

-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해야 한다.
  1. 진입 신고 : 선박교통관제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
    - 가. 선박명, 호출부호, 통과위치
    - 나.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입항 예정 시각, 입항 시각 및 입항 장소
    - 다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
  2. 진출 신고: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나가는 경우
    - 가. 선박명, 통과위치



- 나. 선박교통관제구역 안에 있는 정박지 또는 계류시설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예정 시각, 출항 시각 및 출항 장소
- 다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·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선박교통관제구역별로 정하여 고시한다.

**▣ 관제통신의 제원** <시행령 제9조>

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을 고시해야 한다.

1. 호출부호
2. 관제통신시설
3. 조난·긴급·안전 통신용 채널
4. 관제통신용 채널
5. 운용시간

**5. 관제통신의 녹음** <제15조>

- 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장은 법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통신 녹음방법 및 보존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▣ 관제통신 녹음** <시행령 제10조>

- ① 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"이란

1.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다음의 선박
  - 가. 13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
  - 나. 가. 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
2.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여객선

- ② 선박교통관제관서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의 선장(이하 "선박교통관제관서등"이라 한다)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관제통신을 한 날짜 및 시각과 함께 보존해야 한다.
- ③ 선박교통관제관서등은 관제통신을 녹음하려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. 다만,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일시적인 고장 등으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관제통신 녹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(手記)로 대체할 수 있다.
- ④ **정보의 보존기간은 60일로 한다.** 다만,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관제통신 녹음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

## 제4장 선박교통관제사

### 1.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등 <제16조>

- ① 관제업무는 선박교통관제사가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.

▣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"이란(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) <시행규칙 제5조>

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5급 향해사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면허 취득 후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
2. 무선설비·전파전자통신 또는 정보통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

- ③ 선박교통관제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▣ **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 및 평가** <시행령 제11조>

- ① 선박교통관제사가 되려는 공무원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.
-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중 가장 최근에 이수한 교육의 이수일부터 5년 6개월 이내에 이론 및 실습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. 다만, 재난·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  1. 기본교육
  2. 보수교육
  3.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교육참여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,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습 내용에 대한 평가 점수와 교육참여도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40점 미만의 평가항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, 불합격 처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규정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### 2.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<제17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



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3.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경우
  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·훈련생의 교육·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
- ⑥ 해양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# 3.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<제18조>

1.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, 안전정보의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조언·권고·지시
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및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특보 등의 제공
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박 출입신고·선석·정박지·도선·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
4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 무역항 질서 단속에 관한 정보의 제공
5. 「해사안전법」에 따른 선박 출항통제 관련 정보의 제공
6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#### ▣ "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" (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) <시행규칙 제7조>

1. 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·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·적발 지원
2.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
3.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
4.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

### 4. 관제업무 절차 <제19조>

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이 명백한 사고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 절차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# ▣ 관제업무 절차 <시행규칙 제8조>

-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.
  1. 1단계(관찰·확인) :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관제대상선박이 해양사고 위험이 있는지 관찰·확인
  2. 2단계(정보제공) :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제대상선박에서 요구하는 경우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
  3. 3단계(조언·권고) :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·권고
  4. 4단계(지시) : 관제대상선박이 명백한 해양사고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 또는 안전 조치를 지시
-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절차의 세부 사항은 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

## 5. 선박교통관제사의 권한 <제20조>

-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상기상상태, 항로상태, 해상교통량 및 해양사고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박의 입항·출항 및 이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비함정 출동과 도선 또는 예선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6. 관제시설의 설치·관리 <제21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하여 레이더, 초단파 무선전화, 선박자동식별장치 등 관제업무를 위한 시설(이하 "관제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설의 수리 등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관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▣ 관제시설의 설치·관리 <시행규칙 제9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  - 1. 해상교통량 등 선박교통 상황
  - 2. 지리적 조건 등 설치지역의 환경
  - 3. 관제시설의 비상운용
-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제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에 따른 유지·보수를 실시해야 한다.
  - 1. 정기점검 : 관제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
  - 2. 수시점검 : 관제시설의 고장 또는 성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
  - 3. 조정·정비 :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결과에 따라 원래의 기능·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제시설을 변경·수리·교체하는 작업
- ③ 규정한 사항 외에 관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## 7.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<제22조>

- ① 관제시설은 「전파법」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그 성능을 개량하려는 때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.
- ③ 해양경찰청장은 관제시설의 기능 및 규격을 통일하기 위하여 그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▣ 관제시설의 기술기준 <시행규칙 제10조>

-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.
  - 1. 레이더 : 「전파법」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, 관제대상선박을 탐지·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2. 초단파 무선전화 :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, 관제대상선박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  - 3. 선박자동식별장치 : 「전파법」에 따른 무선국으로 개설허가가 가능한 161.975메가헤르츠



(MHz)와 162.025메가헤르츠(MHz)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해야 하며, 관제대상선박의 위치 등 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.

4. 선박교통관제 운영 시스템 :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제시설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통합  
· 전시할 수 있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제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.

## 8. 기술의 개발·지원 <제23조>

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9.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 <제24조>

- ①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연구·개발 및 교육훈련 등 해양경찰청장 등의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관제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관제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활동
2. 선박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및 사업수행
3. 관제시설의 발전과 기술향상에 관한 연구
4. 해양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
5. 국내외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규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연구
6. 선박교통관제 분야 국내외 유관기관 간 학술교류,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▣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 <시행령 제13조>

1.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·분석
2. 선박교통관제 관련 홍보 및 간행물의 발간

## 10. 권한 등의 위임·위탁 <제25조>

- ①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▣ 권한 등의 위임·위탁 <시행령 제14조>

-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.
  1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
  2.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권한
-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·평가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.



## 제5장 벌칙 및 과태료

### 1. 벌칙 <제26조>

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# 2. 과태료 <제27조>

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법제 1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

▶ 법제 14조제3항 :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2. 법제 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제통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아니한 사람

▶ 법제 14조제4항 :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출입·이동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·응답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지정된 주파수로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.

3. 법제 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

4. 법제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

② 법제 14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▶ 법제 14조제5항 :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항로상의 장애물이나 해양사고 발생 등으로 선박교통의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법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해양경찰 필기, 고득점 합격을 원한다면?

**선택하자, 해사법규**

명품강의, 김성근 교수님



## 제6장 부칙

### 1. 일반적 경과조치

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결정·처분·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### 2.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

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## 3. 다른 법령과의 관계

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해사안전법」 및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